규약·규정집

2025. 5. 29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규약·규정집

2025. 5. 29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차 례

마 크 ····· 1

선 언 ····· 2

강 령 ····· 3

규 약 ····· 4

지역본부 모범운영규정 ····· 22

지부 모범운영규정 ····· 31

조합원가입 및 탈퇴절차규정 ····· 39

명예조합원규정 ····· 44

조합원 가입비 납부규칙 ····· 45

회의규정 ····· 46

처무규정 ····· 51

사무처 내 위임전결 및 대결규칙 ····· 60

출장비 지급규칙 ····· 63

차량운영규칙 ····· 65

직인관리규정 ····· 67

인사 및 보수규정 ····· 68

회계규정 ····· 72

선거관리규정 ····· 77

상벌규정 ····· 139

희생자구제규정 ····· 152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규정 ····· 154

고문 및 지도위원등에 관한 규정 ····· 156

정보통신 운영규정 ····· 158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 164

동아리 지원규정 ····· 166

기금운용규정 ····· 16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 ····· 173

마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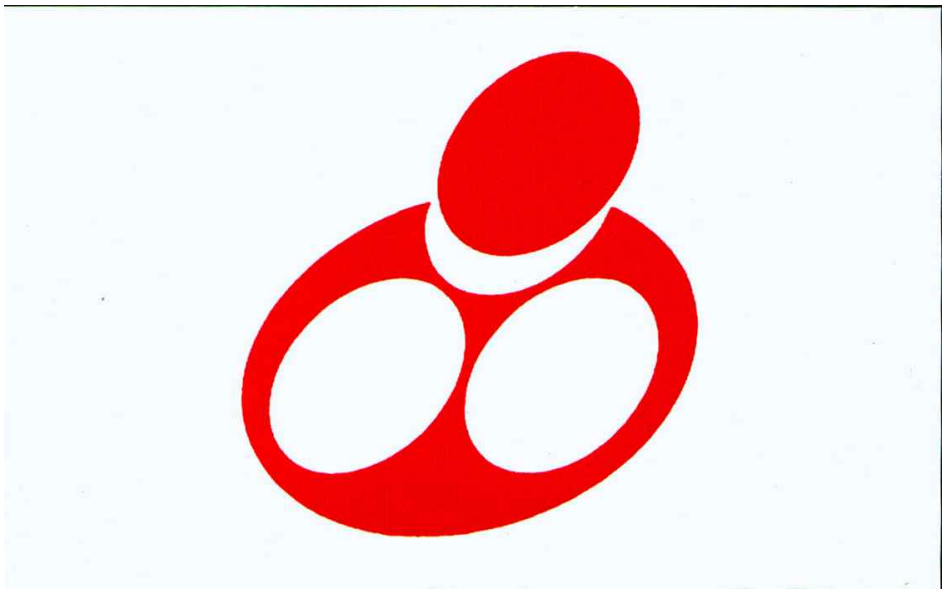

가. 전체적인 형태는 인간 및 대학을 상징
나. 내부의 3개 타원형은 '화합과 단결' 및 직원 교수 학생을 상징
다. 큰 타원에서 돌출된 작은 타원은 발전과 전진 및 직원을 상징
라. 심벌은 적벽돌색(붉은 황토색)으로 자주를 상징
마. 바탕색은 연한 하늘색으로 평화를 상징

1998. 11. 6

전국대학노동조합

선 언

굴종과 침묵을 딛고 교육 주체를 선언한지 10년
대학 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투쟁과 실천을 한데모아
산별 노조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한다.

이제 우리는 대학별로 흩어진 노조를 단일 노조로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의 벽을 허물고 지역별, 직종별 차이를 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계승하여
대학 노동자의 단결의 구심, 투쟁의 구심
전국대학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우리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세우고
고용 안정과 대학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하며
대학의 민주화 교육 개혁, 교육 산별 노조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고 단결하여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이 보장되는 민주 사회 건설과
조국의 자주·민주·통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998. 11. 6

전국대학노동조합

강 령

Ⅰ.우리는 생활 임금 확보, 고용 안정, 노동 조건 개선, 대학 운영 참가를 바탕으로 대학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 기본권을 확보한다.

Ⅰ.우리는 대학 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Ⅰ.우리는 대학 교육 현장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Ⅰ.우리는 대학 내 노동자의 직종·직급 간 불평등 요소를 척결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Ⅰ.우리는 자주적 민주적 노동 운동의 전통을 바탕으로 산별 노조 건설,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통일 단결에 앞장선다.

Ⅰ.우리는 사회 민주화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Ⅰ.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 한다.

Ⅰ.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 노동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1998. 11. 6

전국대학노동조합

규 약

1998년 11월 6일 제정
1999년 3월12일 개정
2000년 2월18일 개정
2000년 9월28일 개정
2001년 8월30일 개정
2002년 8월30일 개정
2003년 2월20일 개정
2004년 9월 9일 개정
2006년 9월21일 개정
2008년 4월24일 개정
2009년 9월10일 개정
2011년 1월20일 개정
2011년 6월23일 개정
2013년 1월22일 개정
2013년 11월28일 개정
2017년 9월26일 개정
2021년 3월 4일 개정
2024년 2월15일 개정
2025년 3월13일 개정

전문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학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인하고, 교육 노동자의 양심으로 대학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민족 민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대학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학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체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자주와 민주를 바탕으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를 이루는 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교육 발전과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하며, 약칭 ‘대학노조’라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Korean University Workers' Union, 'K.U.W.U'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과 강령 및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교육의 발전에 앞장서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노동 진영의 통일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대학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업
② 실질 임금의 향상 및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업
③ 대학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에 관한 사업
④ 대학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수호에 관한 사업
⑤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 및 교육 개혁에 관한 사업
⑥ 소규모 사업장 대학 노동자의 조직화와 열악한 노동 조건 해소 사업
⑦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사회 개혁에 관한 사업
⑧ 생활권 확보를 위한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업
⑨ 여성 노동자 차별 철폐 및 모성 보호에 관한 사업
⑩ 타 노조, 국내·외 노동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⑪ 민주 사회 단체, 민주 교육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⑫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맹하며,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99.3.12 개정)

제2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의 조직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고등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의 노동자로서 설립 정신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 노동조합에 채용된 자, 조합 활동 관련 및 대학의 폐교로 해고된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다. (2006.9.21. 개정) (2021.3.4. 개정) (2025.3.13. 개정)
②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 및 탈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한다. (2006.9.21. 개정) (2021.3.4. 개정)
② 가입 및 탈퇴 처리의 세부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단, 조직적인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2021.3.4. 신설)

제8조의 1(사면 및 복권)
①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및 조합원은 징계 결정 뒤 6개월이 경과하면 위원장에게 사면 또는 박탈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원 또는 징계를 받은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상자와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면 또는 복권 신청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사면 및 복권의 결정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그 찬성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면 및 복권 조치 내용을 당사자와 대학노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④ 사면 및 복권 조치 등의 효력은 대학노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즉시 발생한다.
⑤ 사면 및 복권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제명된 자의 경우 중앙위 심의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③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2011.6.23 신설)

제9조(이중가입의 제한) 조합원의 타 노조 이중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조(지역 본부 및 지부) 조합은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본부와 지부를 둔다.
① 지역본부는 광역시 · 도별로 두되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2개 이상의 인근 광역시·도를 합하거나 분할하여 설치하며, 동일한 성격의 전국단위로 설치된 특성화 본부를 둘 수 있다. (2006.9.21 개정)
1. 지역본부 또는 특성화본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본부 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6.9.21 개정)
2. 지역본부 또는 특성화 본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각 전문 부서를 둔다. (2006.9.21 개정)
② 지부는 단위 사업장별로 설치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성화지부 및 지역 지부(같은 지역본부에 5인 미만 지부가 하나 이상일 경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지부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06.9.21 개정) (2008.4.24. 개정) (2021.3.4. 개정)
1. 지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지부모범운영규정에 의해 운영 돼야 하며, 지부운영규정은 중

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총회, 대의원회, 집행부회의를 둔다. 단 조합원 수 100명 미만인 지부는 대의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3. 지부내의 조합원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021.3.4. 신설)

④ 지역본부장, 지부장은 해당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같은 지역본부에 5인 미만 지부가 하나 이상일 경우 하나의 지역 지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2008.4.24 개정)

제11조(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조합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각종 회의에 참가권, 발언권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결권.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④ 조합 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⑤ 각종 회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대해 공개, 열람,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⑥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제13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④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⑤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⑥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4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2024.2.15. 개정)

제15조(여성 할당제) 대학노조 직선 임원진을 제외한 중앙위원, 대의원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 (2002.8.30. 신설)

제16조(여성 할당제에 관한 규정) 여성 할당제의 시행 시기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02.8.30. 신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7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중앙위원회
④ 전국지부대표자회의
⑤ 중앙집행위원회
⑥ 상설위원회
⑦ 특별위원회
⑧ 선거관리위원회
⑨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운영)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006.9.21. 개정) (2021.3.4. 개정)
② 총회는 지역 본부별,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 총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수립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단체 교섭 및 체결에 관한 사항
6. 단체 교섭 및 체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7. 상급 노동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전 사업장에 해당되는 쟁의 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분할, 합병 및 조직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10. 지역 본부의 설치, 합병, 분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특별 부과금 부과 및 특별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자산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4. 연맹(조합)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의 총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08.4.24. 개정) (2017.9.26. 부분개정)
3. 전 사업장에 해당되는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22조(구성)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관으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6.9.21 개정) (2021.3.4. 개정)
② 임시 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19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제19조 3,4,5항을 준용한다.

제24조(운영) 대의원회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기능)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제20조 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제26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 대의원 배정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본조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되는 임원 및 지역 본부장과 대학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은 본조 대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본다. (2000.9.28. 신설) (2001.8.30. 개정) (2013.1.22. 개정) (2017.9.26. 개정) (2018.9.26. 개정) (2025.8.20. 개정)
② 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배정하되 조합원 75명의 범위에서 1명씩 선출한다.(~75명 1명, 76명~150명 2명, 151명~225명 3명, …, …) 다만, 같은 지역본부에 5인 미만 지부 및 지역지부, 특성화지부는 통합하여 대의원을 배정한다. (2006.9.21 개정) (2008.4.24. 개정) (2021.3.4. 개정)
③ 대의원 선출은 총회 또는 지역별, 직종별 인원 비례에 의해 확정된 선거 구역을 정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7조(대의원의 자격)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한다.
(2003.2.20. 신설)
① 규약이 정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지부의 경우 조합 대의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2006.9.21 개정)
② 조합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지부의 경우는 재적 인원 중 사고로 처리한다.
③ 조합비 압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장,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2017.9.26. 부분개정)
1. 본부별로 1인씩 선출한다.
2. 본부별 조합원 수가 7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750명의 범위에서 1인을 더 선출한다. (2006.9.21 개정)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시 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
④ 삭제 (2024.2.15. 개정)
⑤ 삭제 (2021.3.4. 개정)
⑥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징계결의 및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021.3.4. 개정)
⑧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⑨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⑩ 조합 임원의 유고시 직무 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⑪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⑫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⑬ 중앙교섭위원 및 쟁의 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⑭ 노동쟁의 및 쟁의 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⑮ 지역 본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⑯ 조합의 고문 및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⑰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⑱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⑲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에 속하지 않는 중요 의결 사항.

제4절 전국지부대표자회의

제31조(구성) 각 지부 대표자 및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소집) 전국지부대표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3조(기능) 전국지부대표자회의는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각 지부별 의견 수렴과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처 방안 논의 및 결정.
③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4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2017.9.26. 부분개정) (2025.8.20. 개정)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5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④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024.2.15. 신설)
⑤ 지부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21.3.4. 신설)
⑥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 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⑦ 지역본부의 업무 조사 및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⑧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관한 사항
⑨ 사고 지역본부, 지부의 조직 정비 및 본부장, 지부장 직무 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⑩ 위원장이 소집하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총회,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⑪ 당면 노동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⑫ 지역본부 차원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상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⑬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⑭ 조합의 전문 위원 및 자문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⑮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⑯ 기타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6절 상설위원회

제36조(구성과 운영)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6.9.21 개정)
① 상설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정치위원회, 여성위원회, 통일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산별전략위원회 등을 두며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설치 또는 폐지한다. (2011.1.20 개정)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위원회의 동의로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는 기능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37조(구성과 운영)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공식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38조(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조합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사업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기금사업특별위원회) 기금사업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조합원의 복리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사업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금사업특별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0조(구성 및 운영)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 관리 규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1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대의원,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②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 감사.
③ 지역본부 및 지부의 회계감사 점검 및 조사.

제10절 고문 및 지도 위원 등

제43조(고문 및 지도 위원) 고문 및 지도 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지도 위원의 역할과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전문 및 자문 위원) 전문 위원 및 자문 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 위원 및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위원과 자문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 위원 및 자문 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절 회의

제45조(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특별 결의) 조합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④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47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수석부위원장 1명
③ 부위원장 2명 이내
④ 사무처장
⑤ 회계감사위원 2명

(2004.9.9. 개정) (2017.9.26. 개정) (2025.8.20. 개정)

제48조(권한 및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조합 업무에 전임하여야 한다. (2000.9.28. 개정) (2013.11.28. 부분개정)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되며,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규약·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5.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국장, 부(차)장, 조합의 사무직원의 임면권. (2006.9.21 개정)
6. 상설위원회 위원장 추천권. (2006.9.21 개정)
7. 고문, 자문, 지도, 전문 위원 위촉권
8. 지부장 및 본부장 추인권 (2000.9.28. 신설)

②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2025.8.20. 개정)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③ 부위원장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④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사무처 각 국장, 부(차)장, 사무직원의 임면 제청권.
3. 산하 기구 집행회의 소집권.
4.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의 관리책임을 맡는다.
5. 회계감사에 응하며, 그 책임을 맡는다.
6.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 작성, 업무 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7.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⑤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하반기 1회에 걸쳐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2.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3. 지역본부, 지부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2008.4.24. 개정) (2017.9.26. 부분개정)

② 부위원장과 사무처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가 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부위원장 중 최다득표자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한다. (2008.4.24. 개정) (2017.9.26. 부분개정) (2025.8.20. 개정)

제5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1조(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궐위(사망, 사임, 해임, 사고 등 직무 수행이 불능한 경우) 시 가능한 한 신속히 궐위된 임원을 보선하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2006.9.21 개정) (2008.4.24. 개정) (2017.9.26. 개정) (2025.8.20. 개정)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2006.9.21. 개정)

③ 위원장 궐위 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연장자순), 사무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025.8.20. 신설)

④ 직무대행자는 궐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또는 후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025.8.20. 신설)

⑤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52조(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 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 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장 사무처

제53조(설치 및 구성) 사무처에는 1개 이상의 실을 둘 수 있고, 산하 또는 별도로 전문국을 둘 수 있다. (2009.9.10 개정)
① 사무처의 각 실에는 실장을 각 국에는 국장, 부국장, 부(차)장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009.9.10 개정)
② 사무처 각 실 및 국의 설치와 변경, 운영 및 임무,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 규정 및 보수 규정에 의한다. (2009.9.10 개정) (2021.3.4. 개정)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54조(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조합이 교섭 진행의 필요에 의해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지역본부별, 지부별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②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제55조(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아래의 절차로 체결한다.
① 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체결하고 교섭 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지역본부 또는 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③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단체교섭 안)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제57조(단체교섭단 구성) 조합의 단체교섭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조합의 단체교섭단은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본부, 지부별 교섭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합의 결정으로 해당 지역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한다.

제58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59조(조정신청)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며, 위원장 명의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소속 전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은 중앙위원회(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② 지역본부의 조정신청은 조합에 보고한 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③ 지부의 조정신청은 지역본부와 조합에 보고한 후 지부 집행부회의(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60조(쟁의행위) 쟁의행위 결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의 전국적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역본부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결의 사유와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지부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결의 사유와 내용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1조(쟁의기금) 쟁의기금은 별도로 적립하며 그 액수와 용도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하며 중앙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지역본부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지역본부장은 즉시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③ 지부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지부장은 지부 집행부회의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본부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제63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①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②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64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지역본부, 지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표창 및 포상한다.

제65조(징계) 징계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단 중앙위원 과반수가 연명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위원회에 위임한다. (2000.2.18 개정)
1. 강령, 규약 및 결의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66조(재심)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67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

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68조(조합비) 조합비의 책정 및 납부, 분배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은 매월 급여액 중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일정율의 조합비를 매월 급여일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③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 일정율의 조합비를 지역 본부, 지부에 즉시 송금하여야 한다. 단, 그 비율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9조(기금 및 자산)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자산의 취득,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회 의결로서 행한다.
② 조합의 자산 취득 및 처리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70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006.9.21 개정)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③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준용) 본 규약의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별 본부를 전국 단위로 구성한 경우 그 명칭을 OO본부로 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해 설치된 본부는 지역 본부에 준하여 운영하되,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대의원, 창립 발기인(대의원) 등의 배정과 여타의 권리와 의무도 산하 기구에 준한다.

제4조(경과조치) 조합 설립과 관련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규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 노동조합이 본 조합 결성을 위해 본 조합의 지부로 규약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결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단위 노동조합은 규약 변경 또는 가입 결의 시까지 조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 노동조합이 본 조합의 결성을 위해 본 조합의 지부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가입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은 본 조합의 별지

서식으로 가입 절차를 대신한다.
③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초대 지역본부장은 창립 후 지역 본부 결성 대회 시 소속 지역 본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99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초대 지부장과 지부 임원, 대의원 등은 결성(가입) 당시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임원, 대의원 등이 승계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초대 대의원은 창립 발기인을 겸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99년 개최되는 제2차 정기 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⑦ 초대 임원은 창립 발기인(대의원회)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99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⑧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99년 8월까지는 발기인(대의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⑨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제1차년도 회계 연도는 조합 결성일로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권리의 승계) 이 규약 효력 발생 전, 기존 단위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 협약 등 민사상 제 권리와 의무는 본 조합이 승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회계 연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제7기 임원의 임기는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2008.4.24 개정)

지역본부 모범운영규정

1998년 11월 6일 제정
2000년 2월 10일 개정
2006년 9월 21일 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 본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에 의거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지역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OO시(도)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내 대학노동자의 통일 · 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① 규약에 명시된 사항과 조합의 결의 · 위임 및 지시사항
② 교육 ·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③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④ 투쟁 및 쟁의의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지역본부 활동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노동자 문화의 보급 및 조직강화를 위한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⑦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관한 사항
⑧ 지역 내 타 노조, 단체 등과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지역본부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항.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지역본부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지역본부는 해당 시 · 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역본부에 소속되며, 조합탈퇴와 동시에 지역본부에서도 탈퇴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지역본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조합의 강령 ·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 및 지역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시에 따를 의무
③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할 의무
④ 지역본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역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운영위원회
④ 집행위원회
⑤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총회는 지역본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운영)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006.9.21. 개정)(2022.7.28. 개정)
② 총회는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본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의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본부장은 15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한다.
④ 본부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지역본부, 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역본부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수립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지역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대의원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1. 본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전체에 해당되는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6조(구성) 지역본부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대의원회 소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본부장이 소집한다.(2022.7.28. 개정)
②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 14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소집 절차는 제 14조 3,4,5항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된다. 단,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8조(기능)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15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대의원 배정기준) 지역본부 대의원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 중 조합 대의원을 제외한 인원을 선출한다.
① 지역본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지부조합원 50명당 1명 배정
1. 1명 ~ 50명 : 1명(조합 대의원)
2. 51명 ~ 100명 : 2명(조합 대의원 1명 + 별도선출 1명)
3. 101명 ~ 150명 : 3명(조합 대의원 2명 + 별도선출 1명)
4. 151명 ~ 200명 : 4명(조합 대의원 2명 + 별도선출 2명)
② 지역본부조합원이 1,000명~5,000명 미만인 경우 지부조합원 75명당 1명 배정
1. 1명 ~ 75명 : 1명(조합 대의원)
2. 76명 ~ 150명 : 2명(조합 대의원 2명)
3. 151명 ~ 225명 : 3명(조합 대의원 3명)
4. 226명 ~ 300명 : 4명(조합 대의원 3명 + 별도선출 1명)
③ 지역본부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인 경우 조합 대의원이 겸한다.
④ 대의원을 선출할 때에는 지역별, 직종별 인원비례에 의해 선출한다.

제20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지부장, 지역본부상설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006.9.21 개정)

제22조(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연6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지역본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③ 조합에서 지역본부로 위임한 사항.
④ 지역본부 총회, 대의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역본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⑥ 지역본부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⑦ 지역본부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사항.
⑧ 지역본부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⑨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 의결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4 조(구성 및 소집)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지역본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국, 부장으로 구성한다. (2006.9.21 개정)
② 집행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부장이 소집한다.
③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5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본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지역본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③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④ 지역본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⑤ 지역본부 예산 항,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⑥ 지역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또는 운영위원,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감사.
② 지역본부 대의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③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 감사.
④ 회계감사 후 그 결과를 본부장과 지역본부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6절 회의

제28조(성립과 의결)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특별 의결) 지역본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0조(임원) 지역본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본부장 1명
② 부본부장 약간 명
③ 사무처장 1명 (2006.9.21 개정)
④ 회계감사 2명 이상

제31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장

1.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지역본부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역본부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지역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역본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종위원회 분과장 임명권.
6. 지역본부 간부, 사무직원의 임명 제청권.
7. 지역본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추천권.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② 부본부장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을 대리한다.

③ 사무처장 (2006.9.21 개정)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작성과 업무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지역본부의 대변인이 된다.

④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하반기 1회에 걸쳐 지역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조합에 보고한다.
2.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32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장은 규약에 의거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가와 참가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부본부장과 사무처장, 회계감사는 지역본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006.9.21 개정)

제3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보선) 지역본부는 임원의 유고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단,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5조(탄핵) 지역본부 임원의 탄핵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역본부는 탄핵소추와 탄핵의결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6조(설치 및 구성) 사무국에는 전문부서를 두며, 그 부서와 임무는 지역본부 사무국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37조(단체교섭) 조합의 위임 의해 교섭을 진행한다.

제38조(체결) 조합으로부터 지역본부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체결할 때에는 지역본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39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0조(단체교섭단 구성) 지역본부 단체교섭단은 본부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41조(조정신청) 지역본부의 조정신청은 조합에 보고 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로써 한다.

제42조(쟁의행위) 지역본부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의 결의사유와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3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회계

제44조(재정) 지역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 지원금과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45조(회계) 지역본부의 회계연도, 회계구분은 조합의 회계를 준용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6조(포상 및 징계) 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조합 규약에 의거 처리한다.(2017.9.26.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본부장은 지역본부 창립대회에서 지역본부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조합 초대 임원의 임기와 같다.

지부 모범운영규정

1998년 11월 6일 제정
2000년 2월 10일 개정
2006년 9월 21일 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2019년 5월 2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 본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에 의거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OO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대학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지부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각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의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지부 문제에 해당되는 긴급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 협의
4.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5.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2022.7.28. 개정)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지부는 해당 사업장 단위, 지역 지부인 경우에는 지역 단위에 속해있는 대학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다만, 특성화 지부는 사업장 또는 소속지역의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할 수 있다.(2022.7.28. 개정)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부에 소속되며, 조합 탈퇴와 동시에 지부에서도 탈퇴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부 소속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② 지부의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운영위원회)
③ 집행부회의
④ 회계감사회의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3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지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2006.9.21 개정)(2022.7.28. 개정)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집행부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의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지부장은 1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대표 소집 요청자를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지역본부, 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 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1. 지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5조(구성) 지부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부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지부임원, 지역별, 직종별 인원비례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지부장이 소집한다.(2022.7.28. 개정)
②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 13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소집 절차는 제 13조 3,4,5항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된다. 단,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7조(기능)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14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부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정하되,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부소속 본부조합(파견)대의원과 지역본부(파견)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22.7.28. 개정)

제19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회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절 집행부회의

제20조(구성) 집행부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부 (차)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집행부회의 소집은 월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집행부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집행부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지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
③ 조합, 지역본부에서 위임한 사항.
④ 지부 총회, 대의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⑥ 지부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⑦ 지부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⑧ 지부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⑨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 의결사항.

제4절 회계감사회의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 또는 조합원,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회계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지역본부의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② 지부 총회, 대의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③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 감사.
④ 회계 감사 후 그 결과를 지부장과 지부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5절 회의

제25조(성립과 의결)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특별 의결) 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1명
② 부지부장 약간 명
③ 사무(국)장 1명
④ 회계감사 2명 이상

제28조(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종위원회 분과장 추천권
6. 지부 간부, 사무직원의 임명권.
7. 지부 직종위원회 위원장 등의 추천권.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②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리한다.
③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 작성과 업무 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4. 회계 감사에 응한다.
④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하반기 1회에 걸쳐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제2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은 규약에 의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가와 참가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부지부장과 사무(국)장, 회계감사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3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9.05.23. 개정)

제31조(보선) 지부는 임원의 유고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단,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2조(탄핵) 지부 임원의 탄핵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집행부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부는 탄핵소추 또는 탄핵의결 즉시 지역본부, 조합에 보고하여 중앙위원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집행부서

제33조(설치 및 구성) 지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는 전문 부서를 두며, 집행부서의 설치와 변경,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조합의 위임에 의해 교섭을 진행한다.

제35조(체결) 조합으로부터 지부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부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36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제37조(단체교섭단 구성) 지부 단체교섭단 구성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집행부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38조(조정신청) 지부의 조정신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와 조합에 보고한 후 지부 집행부회의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39조(쟁의행위) 지부의 쟁의행위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을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0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회계

제41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 지원금과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42조(회계) 지부의 회계연도, 회계 구분은 조합의 회계를 준용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3조(포상 및 징계) 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집행부회의 심의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조합 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역본부운영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결의)당시 단위노조 위원장 등은 지부장 등으로 승계되어 잔여 임기가 보장된다.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절차 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2001년 8월 23일 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2019년 5월 2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 규약의 가입 및 탈퇴절차를 구체화함으로서 조합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절차) 조합 가입 및 탈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가입신청서(서식 제1호)를 접수받은 지부는 접수와 동시에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지역본부나 지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지역본부나 조합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지역본부나 지부에 즉시 통보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소관 지부나 지역본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탈퇴서(서식 제2호) 접수 및 처리 절차는 가입절차와 같다.

제3조(권한위임) 조합 가입자 및 자연퇴직으로 인한 탈퇴자에 대한 결정은 조합에서 지부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받은 지부장은 매월 1일 기준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자연퇴직자 명단을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조합에 송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탈퇴자의 재가입) 탈퇴자가 조합에 재가입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가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조합 가입신청서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활동결의서를 첨부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제3조에 의해 위임받은 지부장이 탈퇴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 결정 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05.23. 개정)
③ 조합은 재가입 대상자가 탈퇴당시 징계 제청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조합원가입 및 탈퇴절차 규정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탈퇴를 한 자일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조합이 결정한다. (2001.8.23. 신설)

제5조(명예조합원) 명예조합원 규정에 의해 자연퇴직자 등이 조합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가입하고 지역지부로 재편한다.(2019.1.29. 개정)

제6조(가입제한)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가입거부) 권한을 위임받은 지부장이 가입신청서 제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수즉시 그 사유를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가 입 원 서

※ 아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결재	지부장	본부장	사무처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이 름		생 년 월 일		
대 학 명		근 무 부 서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직 위 / 직 급	/	
소속본부/지부	(지역본부) / (지부)			
주 소	직장		전 화	
			FAX	
	자택		전 화	
			핸드폰	
E-MAIL				
비 고 (의견사항)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수집하는 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학노조 활동과 관련된 모든사항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개인 연락처, 개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국대학노동조합 가입부터 탈퇴시까지

□ 동의 □ 비동의

※ 조합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관리, 회비 처리, 의사소통 등 일부 조합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적극 찬성하며, 규약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교육개혁 쟁취를 위해 함께하고자 조합가입을 희망합니다.

가 입 일 년 월 일

가 입 자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귀중

(서식 제1-1호)

조합비 공제 동의서

아래 본인은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 년 월분 임금부터 조합비를 매월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 속(부서)	성 명	서 명

* 신규가입 및 재가입 조합원에게 적용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서식 제2호)

탈 퇴 서

	결재	지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처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역본부/지부	(지역본부) / (지부)		
사 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노동조합 탈퇴를 희망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위 사람은 노동조합 규약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명예조합원 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2019년 1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에 준하여 명예조합원 가입의 범위와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조합 활동을 확대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한다.(2019.1.29.개정)

제2조(자격) 명예조합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2019.1.29.개정)
① 조합에 가입한 후 자연퇴직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속적인 조합 활동의 의사를 보이고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예조합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2019.1.29.개정)
② 조합원이 아닌 자와 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조합 강령, 규약에 찬동하여 조합활동을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예조합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2019.1.29.개정)

제3조(권리와 의무) 명예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2019.1.29. 개정)
① 명예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제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조합 각급 단위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2017.9.26. 개정, 2019.1.29. 개정)
② 명예조합원은 조합의 명예조합원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2019.1.29.개정)
③ 조합의 강령,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의결기관에서 의결한 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비 납부) 명예조합원의 조합비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며, 정액 1만원을 납부한다.(2017.9.26. 개정, 2019.1.29.개정)

제5조(명예조합원 조직) 명예조합원은 지역본부에 직접 소속되어 지역지부로 편제되며, 지역본부에서 관리한다.(2019.1.29.개정)

제6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합원 가입비 납부규칙

1999년 2월 26일 제정
2017년 9월 29일 개정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가입비 납부기준을 정함으로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때부터 가입한 조합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규칙은 조합설립이후 가입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입비기준) 각 조합원의 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가입 조합원은 조합가입과 동시에 가입비 10,000원을 조합에 납부한다. 단, 조합비 산정 기준 총액이 20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연맹 해산 전 가맹조직이 99년 4월말이후 가입을 결의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2017.9.29.개정)
②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지역본부 참관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본부가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활동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연맹 해산 전 가맹조직으로 99년 3월말까지 가입하는 조합원은 조합비 한 달 분에 해당하는 4000원을 납부하고, 99년 4월말까지 가입하는 조합원은 조합비 두 달 분에 해당하는 8000원을 납부한다.

제4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의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 규약 제4장의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여 각종 회의 운영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회의성립 및 의결)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출석)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중앙위원회의 경우 후보중앙위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불참한 중앙위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지역본부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지역본부 임원으로 지역본부장의 위임장을 소지한 경우.

제4조(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단, 불가피하여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의장

제5조(의장)
①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회의에 의장이 되며, 위원장 궐위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궐위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하고, 부위원장 궐위시는 사무처장이 의장이 된다.(2017.9.26. 개정) (2025.8.6. 개정)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①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②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③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④ 동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⑤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⑥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⑦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⑧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⑨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서기와 회의록

제8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9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① 출석인원의 점검
②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③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 회의의 종류
② 회의의 일시 및 장소
③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④ 안건
⑤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⑥ 표결가부의 수
⑦ 기타 중요사항

제11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역본부

와 지부, 해당 회의의 성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장 의사의 진행

제13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② 제안자의 제안 설명
③ 질의
④ 토의
⑤ 표결

제14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①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회 상정 안건은 늦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상정안건은 늦어도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③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와 재청 후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대의원회의 경우 대의원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안건을 제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의사진행
② 토론종결
③ 의장 불신임
④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⑤ 정회, 휴회, 폐회

제16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①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②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③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④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7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20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1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하여야 한다.

제23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① 구두
② 거수

③ 기립
④ 기명 투표
⑤ 무기명투표

제24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5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25조(공개 여부) 조합원은 모든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단,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는 의장이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질서유지)
①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처무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2000년 2월 10일 개정
2005년 4월 12일 개정
2018년 4월 24일 개정
2026년 1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52조에 따라 조합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조합의 일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사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 및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책무) 사무처의 성원은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써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4조(기능) 사무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논의
②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의 결정 사항 집행
③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④ 각 국의 업무 조정 심의
⑤ 기타 사항

제5조(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운영은 사무처장이 총괄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처 회의의 결정으로 각 국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사무처의 질서 유지 및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 유고시는 사무부처장이 대행하며, 사무부처장까지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집행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실·국의 일상 업무는 당해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개정

2018.4.24.)
④ 각 실·국장은 업무 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24.)

제6조(회의)
① 사무처회의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22.7.28. 개정)
② 사무처 성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사무처회의는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밀보호) 조합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문서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8조(겸직금지) 사무처 성원은 다른 조직(단체)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민주노총과 조합의 방침으로 결성되거나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역할

제9조(구성) 조합 사무처는 산하에 다음의 전문 실·국·부서를 설치하고 실, 국, 부장 및 부원을 두어 업무를 집행한다. (2000.2.10. 개정)(2022.7.28. 개정)
① 총무국 - 총무부
② 정책실(국) - 정책부(2022.7.28. 개정)
③ 조직실(국) - 조직1부, 조직2부, 쟁의교섭지원부(2022.7.28. 개정)
④ 교육국 - 교육부
⑤ 선전국 - 선전부, 정보통신부
⑥ 법규국 - 법규부 (2005.4.12. 신설)
⑦ 조사통계국 - 조사통계부
⑧ 문화국 - 문화부
⑨ 여성국 - 여성부
⑩ 연대사업국 - 연대사업부

제10조(임무와 역할) 사무처 각부서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총무국
1.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2. 문서의 편찬, 보관 및 폐기 처분
3. 사무처 성원의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 관리
6. 재정 운영 및 금전 출납
7. 비품 관리 및 소모품의 수급 관리
8. 조합원 명부 관리

② 정책실(국)(2022.7.28. 개정)

1. 정책 활동 계획 수립 및 집행
2. 고용 안정 대책 및 직무 훈련에 관한 연구 분석
3. 조직 발전 전망 제시
4. 대학 교육 정책 대안 마련 및 학원 민주화 투쟁 방침 마련
5. 기타 조합에서 요구되는 제반 정책 연구
6. 조합의 각종 법률 상담 및 법률적 대응 방침 결정
7. 주요 법률적 쟁점 정리 및 교육

③ 조직실(국)(2022.7.28. 개정)

1. 조직 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
2. 조직의 확대, 강화사업
3. 지역본부 및 지부활동 지원과 지도
4. 특성별 지원 및 조정
5. 조합원 관리 방안 수립
6. 노동쟁의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7. 쟁의행위 지원, 지도
8.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
9. 쟁의 전술 연구 및 개발
10. 노동 조건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11. 노조 운영 및 쟁의 관련 상담
12. 교섭 논리 개발
13. 통일 교섭 및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
14. 협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국

1. 교육 정책 및 교육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도
2.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및 교육자료 제작
3. 지역본부와 지부의 교육 활동 지원 및 지도
4. 노동 교육 관련 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

⑤ 선전국

1. 조합의 기관지 제작 배포
2. 대자보, 선전물 등 선전 활동
3. 선전 자료 및 지침의 수립

4. 기타 조합 활동에 대한 홍보
5. 컴퓨터 통신 관련 업무
6. 사무 관리 자동화

⑥ 법규국
1. 조합의 각종 법률상담
2. 조합의 법률적 대응방침 결정
3. 법률자료집 발간
4. 주요 법률적 쟁점정리 및 교육

⑦ 조사통계국
1. 임금 및 노동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개선 방침 수립
2. 물가, 생계비, 의식 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
3. 각종 통계 및 자료 수집 정리
4. 각종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⑧ 문화국
1. 노동 문화 정책의 입안 및 대책 수립
2. 대학 노조의 각종 문화행사 개최
3. 지역본부와 지부의 문화 활동 지원 및 지도
4. 문화 부서 연대 활동 및 문화 단체와의 연대

⑨ 여성국
1. 여성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남녀평등 실현
2. 여성 정책 수립 및 대책 마련
3. 여성 조합원의 조합 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 지도
4. 여성 단체와의 연대 활동

⑩ 연대사업국
1.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협력 활동
2. 정치 활동 및 노동자 정치 세력화 방침 수립
3. 지역 차원의 정치 활동 지원 및 지도
4. 국제 노동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 사업
5. 조직의 국제 활동 지원 및 지도
6. 국제 노동 운동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제11조(사무처 성원의 산하조직 파견)
① 위원장의 인사명령과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산하조직 사무처에 사무처 성원 약간 명을 파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②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승인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개정 2026.01.20.)
③ 산하조직에 파견된 사무처 성원에 대한 인사권은 위원장에게 있다.(신설

2018.4.24.)
④ 산하조직에 파견된 사무처 성원은 조합 중앙에서 참석하도록 정한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사업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신설 2018.4.24.)
⑤ 산하조직에 파견된 사무처 성원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 받은 산하조직 사무처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이 경우 조합 중앙의 방침을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8.4.24.)
⑥ 지역본부에 파견된 사무처 성원의 근무지, 근태관리, 복무 등 일체의 관리업무는 해당 지역본부장이 관할한다. (신설 2026.01.20.)

제3장 문서처리

제12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 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국과 관련 있는 사항은 국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문서 전자결재 원칙)
① 조합의 일반적인 문서처리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자결재문서는 본 규정에서 정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법령·규약 또는 대외 요구로 서면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6.01.20.)

제13조(결재 및 시행)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국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 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접수 및 발신)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국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 대장과 발송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착 문서는 총무국에서 개봉하여 접수 대장에 기재한 후 접수 번호를 문서에 기재하여 관련 실, 국, 부에 인계한다.(2022.7.28. 개정)
③ 각 국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을 총무국에 보내면, 총무국은 문서발송대장에 발송 번호를 붙인 후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5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문서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접수번호 순에 따라 철하고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 연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③ 결재문서는 총무국에서 보관한다.
④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6.01.20.)

제17조(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② 조합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③ 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항 이외의 것 --- 5년
④ 전 3항 이외의 문서 --- 3년

제18조(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간행물 및 도서

제19조(간행물)
① 조합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선전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국에서 발행한다.

제20조(도서 및 신문)
①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국에 보관한다.
② 조합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총무국에서 국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 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5장 근무

제21조(근무시간) 근무 및 휴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계절의 변화 등 필요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5.4.12. 개정)
①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② 휴게시간: 정오 - 오후1시

제21조의2(근무형태)
①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 승인 하에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부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01.20.)

제21조의3(시간외근무 및 유연근무제)
① 시간외·주말근무 수당은 정기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01.20.)

제22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총무국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 일수를 적어 실장 또는 국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2.7.28. 개정)

제24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 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출장

제25조(출장)
① 사무처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은 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③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 명령부에 기재한 후 총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출장비 취급) 출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장비지급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7장 휴일, 휴가 등

제28조(휴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노동절(5월 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5. 대학노조 창립기념일 (2005.4.12 신설)
② 사무처장은 업무 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26.01.20.)

제30조(휴가) 휴가는 다음과 각 항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2일
3.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의 회갑 : 2일
4. 백숙부모 회갑 : 1일
5. 배우자의 출산 : 3일
6.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7. 조부모, 백숙부모,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상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 : 1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3.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4. 기타 필요한 경우

③ 각종 휴가는 국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모성보호) 사무처 성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90일)와 육아 휴직 등을 보장한다.

제32조(휴직) 사무처 성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하며, 기준은 아래 각항과 같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유급
②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 시 --- 90일 이내 무급
③ 육아 휴직 --- 1년 이내 무급
④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⑤ 기타 필요한 경우

제33조(건강관리)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8장 기타

제34조(적용) 이 규정은 지역본부, 지부 집행단위 운영에 준용한다.

제35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무처 내 위임전결 및 대결규칙

1999년 2월 26일 제정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처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조합 사무처(이하 ‘사무처’)의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각 직위별로 배분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의 전결 및 대결처리는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 및 대결권자는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 사항의 처리) 전결 권한의 행사는 그 권한을 가진 직위의 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권한 있는 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는 그 직을 대행하는 자 또는 그 직상위자가 행사하거나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요전결 사항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내용을 직상위자 및 최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 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 및 접수문서)는 위원장의 최종결재를 득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처리한다.

제7조(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및 기타사유로 인해 위원장이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석부위원장 또는 임원중에서 대결 처리토록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및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무처 내 위임전결 및 대결규칙

〈별표 1.〉 전결사항

(○표는 전결, △표는 보고)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사무처장	실·국장	부장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시행문서	○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		
사무처 성원의 휴가, 결근 (임원은 제외)	○		
조퇴 및 외출허가 (임원은 제외)	○		
국내출장명령 (임원은 제외)	○		
보존문서 관리 및 처리	○		
제 증명발행		○	
차량관리		○	
신문 및 잡지구독 신청		○	
급여, 상여금 지급	○		
정기적인 경상비 지출	○		
정례화된 조직현황, 투쟁속보, 주지사항 통보	○		
초청장, 안내장	△	○	

출장비지급규칙

1999년 2월 26일 제정
2005년 4월 12일 개정
2022년 4월 19일 개정
2022년 7월 28일 개정
2026년 2월 9일 개정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처무규정 제6장에 따라 대학노조의 출장비지급 원칙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노조의 임원, 사무처 성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지역본부, 지부에 준용한다.

제3조(출장의 구분 및 승인) 조합업무 수행과 관련한 출장은 국내출장, 국외출장으로 구분하며, 사무처장의 승인으로 출장한다. (2005.4.12. 개정) (2026.2.9. 개정)
① 국내출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의 동일 생활권내의 출장으로 당일 출장~~을 말한다~~. 과 시내·수도권 이외 숙박출장으로 구분한다.
② 국외출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 조합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① 국내출장은 다음 각호의 산출금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출장비 산출금액표]

[단위 : 원]

거리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일비	합계
50㎞이내	80,000	10,000	25,000	20,000	135,000
50㎞초과 100㎞이내	80,000	20,000	25,000	20,000	145,000
100㎞초과 150㎞이내	80,000	30,000	25,000	20,000	155,000

150㎞초과 200㎞이내	80,000	40,000	25,000	20,000	165,000
200㎞초과 250㎞이내	80,000	50,000	25,000	20,000	175,000
250㎞초과 300㎞이내	80,000	60,000	25,000	20,000	185,000
300㎞초과 350㎞이내	80,000	70,000	25,000	20,000	195,000
350㎞초과 400㎞이내	80,000	80,000	25,000	20,000	205,000
400㎞초과	80,000	90,000	25,000	20,000	215,000

※ 1. 숙박비 : 1박 기준이며, 주관기관(상급단체, 지역본부 등)에서 숙박제공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2. 교통비 : 버스, 철도, 자가용((톨게이트비용 포함) 왕복요금 경우에 해당되며, 항공, 선박 이용시에는 실비를 지급함.

3. 식비 : 1일 기준이며, 주관기관(상급단체, 지역본부 등)에서 식사제공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4. 일비 : 1일 기준으로 현지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② 국외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금액을 지출한다. (2005.4.12. 신설) (2026.2.9. 개정)

1. 교통비(항공료), 숙박비는 실비로 하며, 초청기관에서 제공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식비와 일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 출장국 체류기간에 한하며, 연수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액의 50%를 지급한다.

[국외출장비 산출금액표]

[단위 : US$]

구분	해당지역	식비/1일	항공운임	일비
갑지	유럽, 미주, 대양주, 일본	50	Business class	20
을지	중국, 동남아, 기타지역	30	Economy class	20

※ 출장금액은 출국전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차량운영규칙

2005년 4월 12일 제정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원하면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물론 조합비의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관 부서) 조합의 차량관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국에서 관장한다.

제4조(용도 폐지) 주관 부서는 차량이 다음 항목에 해당 될 때에는 재산 및 손망실의 결정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①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계속 보유 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
② 정비에 필요한 부속이 희귀하여 계속 운행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차량
③ 기타 폐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5조(운행) 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에 행선지를 표기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관리 책임) 운전자는 지정된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상 발견즉시 총무국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관리책임은 총무국에서 관장하되 운전자중 정·부 책임자를 두어 차량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정·부 책임자를 선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

제7조(월간 정비, 예방 정비) 운전자는 예상될 수 있는 고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일점검 및 월별 예방정비를 실시하며 차량관리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제8조(운전자의 의무)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와 본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주관 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운행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제9조(차량운행 사용) 조합활동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 차량을 운행한다.

제10조(차량사고 시 책임과 보상) 운전자가 연맹의 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 시

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차량운행 비용) 차량운행에 따른 주유, 주차, 정비, 보험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한다.

제1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차량운행 준수사항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행에 노력하고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의 경우
1. 임차인의 부주의 또는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및 기타 각종 사고 발생 시 임차인(기관)이 원상복귀를 책임진다.
2. 차량반납 시 임차인(기관)은 유류100% 보충, 내부청소 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3.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차량사용이 3회 이상 불량한 임차인(기관)은 임차할 수 없다.
4. 타 기관 임대 시 1회 사용료 50,000원

◖ 내부운행의 경우
1. 차량운행 전에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열쇠를 수령한다.
2. 차량운행을 마친 후 반드시 내부청소를 하고 열쇠를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직인관리규정

1999년 8월 20일 제정
2006년 5월 2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의 직인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
① 대학노조 직인은 본부조합에서 직접 관리한다. (2006.5.26 개정)
② 조합 위원장이 본부, 지부에 직인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본부조합은 별도의 직인 관리 대장에 직인 사용자,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006.5.26 개정)

제3조(사용)
① 대학노조 직인 사용은 단체 교섭(임금 · 단체 협약, 노사 협의회)의 합의서에 조인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학노조 위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006.5.26 개정)
② 본부, 지부에서 ①항의 필요에 따라 본부조합에 직인을 요청할 땐 반드시 가합의 안을 첨부해야 하며 본부조합은 즉시 해당 본부, 지부에 직인을 보내야 한다. (2006.5.26 개정)
③ 본부, 지부는 대학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거친 ①항에 해당하는 합의서 등에 직인을 사용한 후 즉시 본부조합으로 반납해야 한다. (2006.5.26 개정)

제4조(위반조치) 직인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합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 (2006.5.26 개정)

제5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제정일 이전 본부장의 책임 하에 합의되어 단체·임금·노사협의회의 체결에 사용된 직인은 이 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대학노조 직인은 2006년 6월15일까지 본부조합으로 반납한다. (2006.5.26 개정)

인사 및 보수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1999년 5월 7일 개정
2005년 4월 12일 개정
2009년 12월 7일 개정
2014년 5월 12일 개정
2018년 4월 2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사무처 성원의 임명, 채용, 임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명이라 함은 사무처 각 실, 국, 부 등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채용이라 함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 성원으로 선발함을 말한다.
③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무처 성원과 조합의 전임 임원에 대해 적용하며, 지역본부, 지부의 집행단위에 준용한다.

제2장 인사

제4조(임명) 조합의 사무처 성원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 성원의 직책부여는 이 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직책 소요 연수에 따라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력서
② 기타 인사상 필요한 서류

제6조(인사발령 절차) 사무처 성원의 인사발령은 사무처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7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 처분, 규약과 이 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사무처 성원의 자격기준) 사무처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①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②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성
③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④ 조직적인 규율성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직책 소요연수) 조합의 국장, 부장, 차장은 다음 각 항의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한다. (2005.4.12. 개정)
① 실·국장은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부서 유관 업무, 조합근무 경력 합산 7년 이상인 자로 임명한다.(개정 2018.4.24.)
② 부장은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부서 유관 업무, 조합근무 경력 합산 3년 이상인 자로 임명하되, 합산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차장으로 임명하여 해당 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실장은 각 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신설 2018.4.24.)
④ 실장은 국장 직급자 중 유자격자로 임명하며, 보직을 면할 때에는 국장 직급을 유지한다.(신설 2018.4.24.)
⑤ 위 각 항과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여 경력에 합산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10조(퇴직) 사무처 성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년퇴직 : 정년은 만 60살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년의 말일로 한다.
③ 당연 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11조(순환인사)
① 사무처 성원은 중앙부서와 산하조직 간 순환인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8.4.24.)

제12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임원 전체로 구성한다. 단, 지역본부 사무국 성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장 전원의 합의로 한다.(2025.8.6. 개정)

제3장 임금

제13조 (임금)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같은 연령과 경력의 조합원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조직 파견자의 임금이 사무처 지급기준에 의한 임금 총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그 차액 분을 지급한다.
③ 사무처 성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1월로 한다. (2014. 5. 12 개정)

제14조(호봉산정) 조합전임자의 초임보수는 별첨과 같은 호봉표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사회경력을 포함한다.
① 학력은 1호봉부터 출발하며 1년에 1호봉씩 가산한다.
② 군 경력, 대학근무경력, 노동단체 활동경력은 100%, 시민·사회운동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2014. 5. 12, 2018. 4. 24 개정)
③ (삭제 2018. 4. 24)
④ 노동·시민·사회운동으로 인한 징역의 경우는 2항을 준용한다. (2014. 5. 12, 2018. 4. 24 개정)
⑤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어 조합활동을 계속한 경우 해직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15조(호봉승급) 호봉승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며, 기준은 채용월로 한다.

제16조(상여금)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5.4.12. 개정)
① 상여금은 총 70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 시기는 매월 급여일에 각 50%씩 지급하며, 설, 추석, 여름휴가(7월), 연말(12월)에 각 25%를 지급한다.

제17조(법정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연차 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며, 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05.4.12. 개정)
① 초과근로수당 : 일괄적으로 매월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연차 수당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일급금액 : 통상임금/22일, 시급금액 : 통상임금/176시간)으로 한다.

제18조(제 수당) 제수당의 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005.4.12. 개정)
① 가족수당 : 본인을 포함하여 1인 10,000원
② 장기근로수당: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1년마다 5,000원(10년까지)
③ 직책수당 : 실장 70,000원, 국장 50,000원, 부장 30,000원, 차장 20,000원 (2009.12.7.개정)
④ 급량비 : 100,000원
⑤ 교통보조비 : 100,000원(수당신설) (2009.12.7. 개정)

제19조(지급시기) 임금은 매월 25일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2005.4.14.개정)

제20조(공제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근로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국민연금
②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③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재형저축금 및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제21조(퇴직금) 실제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다음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
① 퇴직금은 퇴직 전 3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년, 월,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처무규정 제31조에서 정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기존 호봉표 중 1~4호봉을 삭제하고, 기존 5호봉을 1호봉으로 변경 조정한다.(2018. 4. 24.)

회계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적용)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한 조합의 예산과 회계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자산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해서는 규약 제68조에 따른다.

제3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규약 제69조에 따른다.

제4조(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하며, 대의원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 편성) 예산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말에 조합의 수입, 지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 예산안은 별표1.의 예산편성 계정과목에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편성한다.

제7조(예비비) 예산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3/100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8조(가 예산 및 경정예산)
① 대의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 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②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9조(예산의 내용) 수입 및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 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한다. 단, 예산 편성 계정과목표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하되 중앙위원회 예산안 심의로 대신한다.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회계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사무처장은 매회계년도의 7~8월과 다음 해 1~2월에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표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2022.7.28. 개정)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처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으로 처리한다.

제3장 수입 및 분배

제14조(조합비) 조합비는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의 절차에 의해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 일정율의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기금과 부과금) 기금 및 부과금은 규약 제12조 제6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결정되어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 및 지원금
②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③ 잡수입 : 의무금과 1항 2항 이외의 수입

제17조(조합비 배분) 조합은 지역본부, 지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규약 제67조에 따라 결정된 분배비율의 금액을 징수 즉시 배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처리

제18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금전출납취급자) 총무국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② 총무국 이외의 국은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국이외의 국이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 없이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5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3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총계정원장
② 현금출납부
③ 자산 및 부채원부
④ 수입부
⑤ 기타 보조부

제24조(월계표)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전표의 종류) 거래전표는 현금입금전표, 현금지급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의 결재에 의해 장부에 의한 전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 및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7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총무국장이 날인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증빙서를 대신한다.

제6장 자산관리

제28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9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 및 내용 연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 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1조(자산 및 비품 관리)
① 총무국은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기입하고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7장 회계감사

제32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년 9~10월과 다음 해 3~4월에 실시한다.

제33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①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②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③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④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⑤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⑥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⑦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⑧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⑨ 기타 필요한 사항.

제34조(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14조와 제17조는 99년 9월부터 시행한다.

(서식 생략)

선거관리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2000년 2월 10일 개정
2014년 5월 12일 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규약 제48조에 따라 직접선출 하는 각급 임원(조합의 위원장, 지역본부의 본부장, 지부장)과 간접선출 하는 각급 임원(조합의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지역본부의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지부임원) 및 각급 대의원(중앙대의원, 지역본부대의원, 지부대의원)을 공정히 선출하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7.9.26. 개정) (2025.8.6. 개정)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각급 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각급 임원 및 대의원(조합대의원, 지역본부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온라인 투·개표) 이규정 29조~38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거 직전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으로 투·개표를 할 수 있다. 온라인 투·개표 진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2022.7.28. 개정)(2022.10.6. 개정)

제4조(선거관리)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① 지역본부 임원 및 대의원선거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② 지부 임원 및 대의원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5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 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6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전 조합비 납부일에 조합비를 정상 납부한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단, 사용자측의 급여미지급 등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7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단, 새로이 설치된 지역본부나 지부의 경

우는 예외로 한다.
① 각급 단위 임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있다.
② 각급 단위 대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임기 시작일로부터 6월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있다.

제8조(선거일 및 공고)
① 조합 및 지역본부장의 선거일은 해당 선거년도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각급 단위 선거는 해당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및 지부 집행부회의에서 정한다. 단, 조합의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지역본부 임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 30일 이전에,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 이상
②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명 이상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명 이상

제10조(선거관리위원의 선임)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대의원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1항, 2항, 3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각급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공고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선거관리 및 직무) 선거관리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선거관리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단, 지부 또는 선거구별 동시선거인 경우에는 해당 지부 또는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 ·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임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직접 선출되는 지부임원 선거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전까지로 한다.

제14조(결원보충) 위원이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서식 제1호)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일 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16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단위에서 부담한다.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7조(선거인명부작성)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 및 정정요구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014. 5. 12 개정)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등록) 각급 단위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직접 선출하는 각급 임원선거.
1.조합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 지역본부 이상, 10개 지부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400명 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0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2017.9.26. 개정)

2.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 지부 이상에서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40이상 1/25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0일전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3. 지부장에 입후보(또는 지부장과 동반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지부 조합원의 1/25이상 1/10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4. 제1호, 제2호의 추천자 수는 특정지부에서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② 간접 선출하는 각급 임원선거.

1. 간접 선출하는 각급임원(조합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지역본부의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지부임원)의 선출은 각급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2017.9.26. 개정) (2025.8.6. 개정)

2. 선거일은 직접선거 임원을 선출한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대의원회일로 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3. 조합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3개 지역 5개 지부 10명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지역본부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3개 지부 5명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지부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대의원(대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지부는 조합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7일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합 임원인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2000. 2. 10 개정) (2017.9.26. 개정) (2025.8.6. 개정)

4. 회계감사 입후보자와 회계감사가 아닌 입후보자 간에는 복수추천을 할 수 있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 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④ 각급단위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000.2.10. 신설)
(2017.9.26. 개정)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및 조합에 대한 자기주장 등을 등록마감 익일까지 공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제21조(주의 및 경고)

① 제28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②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2조(자격상실) 다음 각 항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2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은 지부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본부 임원 및 조합 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3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공보)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학력,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등록 마감 후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5조(홍보물)
①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규격으로 개인 홍보물을 3회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후보자가 개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필해야 한다.

제26조(합동연설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합동연설회의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광역시도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도내 조합원 수가 250명 미만일 경우 인근 광역시도와 연합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광역시도내에서 2회 이상의 합동연설회가 필요할 경우 지부별로 개최하거나 몇 개 지부를 묶어서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선출하는 본부임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별로 1회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부조합원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인근지부와 연합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간접 선출하는 각급단위 임원은 선거일 대의원회장에서 투표에 앞서 합동연설의 시간을 갖는다.
④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 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⑥ 합동연설회 세부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직접 선출하는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방문선거운동 금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개인연설회 금지) 각급 단위선거에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합동연설회 외에 10인 이상의 다중을 모아 개별적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9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③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금품, 향응, 재산상의 이익, 조합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⑥ 대학의 특정한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⑦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⑧ 사무처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⑨ 기타 규약이나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6절 투표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 투표는 인근 지부를 연합하여 선거구를 정하거나 지부별로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투표는 1일로 하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완료한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부재자투표)
① 부재자투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실시한다.
②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히 부재자투표 대상 조합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조합선거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본부 선거인 경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구별 동시투표인 경우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 대상인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빠른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④ 부재자투표는 투표최종 마감시간 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도착한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서식 제6호)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조합 임원 선거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본부 본부장선거용은 지역본부선관위에서,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용은 지부선관위에서 제작하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선거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야 하며, 조합, 지역본부 선거 시 선거구별 동시투표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7일전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3조(투개표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구, 개표구마다 투개표참관인 1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단, 투개표참관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투개표참관인은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단,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장 후보의 경우 투개표참관인이 없을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증(서식 제7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후보자 또는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투표참관인이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제35조(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7절 개표

제36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014. 5. 12 개정)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조합 선거는 중앙에서 취합하여 개표한다.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선거 투표율(서식8-6호)을 보고하고, 투표함과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2014. 5. 12 개정)
④ 지역본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동시 개표하는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전언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제37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①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지정인원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④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⑤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⑥ 중앙에서 취합하여 개표하는 선거에서 투표일 자정까지 도착하지 않은 투표함은 전체 무효처리 한다. (2014. 5. 12 개정)

제38조(투표결과 보고)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서식 제8호)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언보고(서식 제8호)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한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용지, 선거록, 선거인명부를 해당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서식 제8호)하여야 한다. 단, 개표를 각 지부별 또는 선거구별로 진행한 경우 지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별,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제39조(당선인 결정)
① 당선은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위 1항과 2항에 의해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합 위원장으로 입후보한 조합원은 조합위원장 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서식 제9호)한다.

제8절 재선거 · 보궐선거

제4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8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8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해 선거무효 또는 당선이 무효된 경우.

②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각급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위원장, 지역본부장선거가 일부 지부 또는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해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 또는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여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2017.9.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2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각급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임원에 대하여 각 선출기관에 의해 불신임 사퇴하거나 탄핵이 의결되었을 때

②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위원장선거 20일, 지역본부장선거 15일, 지부장선거 7일을 최소로 한다.

④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⑤ 보궐선거의 절차는 이 규정 선거절차에 준하되, 그 기간은 비율만큼 단축할 수 있다.

제9절 대의원선거

제43조(선거일 및 공고) 대의원 선거구는 지부로 하며, 선거공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 대의원 선거는 15일 이전에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는 15일 이전에 공고하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③ 지부 대의원 선거는 15일 이전에 공고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4조(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45조(후보자등록)
①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대의원활동 등에 대한 계획 등을 등록마감 익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지부대회에서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한 종류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단, 선거홍보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제47조(투 · 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8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조합 대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본부대의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절 이의신청

제4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지부임원선거의 이의신청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지역본부임원과 조합 임원선거의 이의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28조 2항, 6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확정 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50조(제재) 각급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지도)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1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52조(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다른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 처리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제1항에도 제2대 본부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선거 시에는 선거공고일 전월까지 조합에 가입하고 선거공고일 전 조합비를 완납한 조합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 공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위원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추천서 1통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1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 공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추천서 1통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2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공고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본부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부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추천서 1통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3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임원 선거 공고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추천서 1통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4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장 선거 공고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부장(및 동반출마를 채택하는 경우 직책)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추천서 1통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1-5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임원 선거 공고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장소 :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추천서 1통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2호-겉표지)

선거인 명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 임원, 본부장, 지부임원, 조합대의원, 지역본부대의원, 지부대의원)선거인 명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열람

년 월 일 확정

(해당선거관리위원회만 표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2호-내지)

(내용) ¦ ←해당선거만 표기→ ¦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연령	위원장 (임원)	본부장 (임원)	지부장 (임원)	본조 대의원	지역 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역	지부	부서									

(서식 제3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 등록 신청서

1. 입후보자

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들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1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 등록 신청서

1.입후보자(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2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본부장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1.본부장 입후보자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본부장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3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1.입후보자(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4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장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1.입후보자

1)지부장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동반출마자의 경우 직책)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들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지부장(및 동반출마의 경우 직책) 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5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서

1.입후보자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 추천자성명

번호	지역본부	지 부	부 서	성 명	날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3-6호) 이력서

<table>
<tr><td rowspan="3">사
진</td><td colspan="6">이 력 서</td></tr>
<tr><td>성
명</td><td></td><td>(인)</td><td colspan="3">주 민 등 록 번 호</td></tr>
<tr><td colspan="5">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td></tr>
<tr><td colspan="2" rowspan="3">연락처</td><td>자
택</td><td colspan="2"></td><td>전화</td><td></td></tr>
<tr><td></td><td></td><td>H·P</td><td></td></tr>
<tr><td>직
장</td><td colspan="2"></td><td>전화</td><td></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td><td>FAX</td><td></td></tr>
<tr><td colspan="3">년 월 일</td><td colspan="3">학 력 및 경 력 사 항</td><td>발령처</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able>

(서식 제4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필증

1. 위원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들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 분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4-1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필증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가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 분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4-2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본부장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본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가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본부장선거에 입후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분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4-3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가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분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4-4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장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1.지부장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는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지부장 (및 동반출마자 직책)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분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동반출마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직책.

(서식 제4-5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 필증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후보

소속 : 지역본부 지부 직위 :

성명 :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위 동지가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분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5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위원장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위원장							
2	위원장							
3	위원장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1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될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부위원장	1							
	2							
	3							
	4							
사무처장	1							
	2							
	3							
	4							
회계감사	1							
	2							
	3							
	4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2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본부장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2							
3							
4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3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될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제 대 임원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부본부장	1							
	2							
	3							
사무처장	1							
	2							
	3							
회계감사	1							
	2							
	3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4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장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될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 대 지부임원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1	지부장 ( )							
2	지부장 ( )							
3	지부장 ( )							
4	지부장 ( )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5-5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될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제 대 임원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 호		성 명	소 속			성별	생년월일	경력
			지역본부	지부	직위			
부지부장	1							
	2							
	3							
사무국장	1							
	2							
	3							
회계감사	1							
	2							
	3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6호)

투 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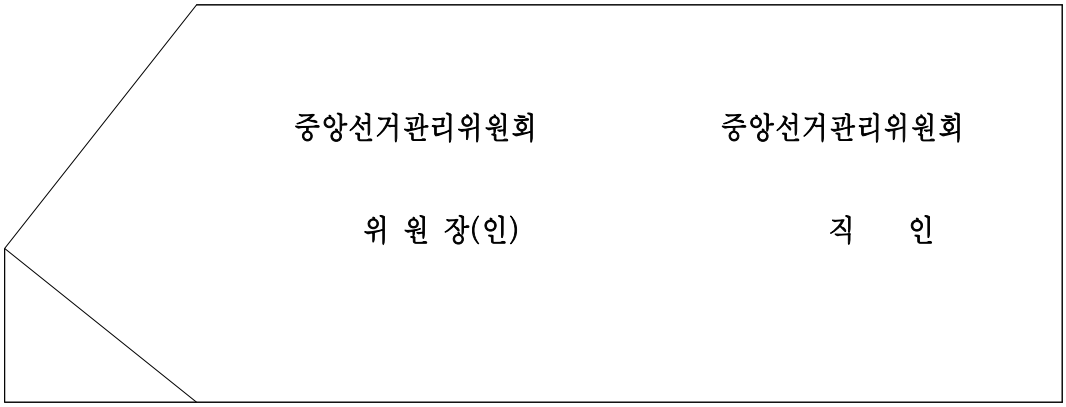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위원장 선거

기호	성명		기표
1	위 원 장		
2	위 원 장		

(후면)

*** 단일후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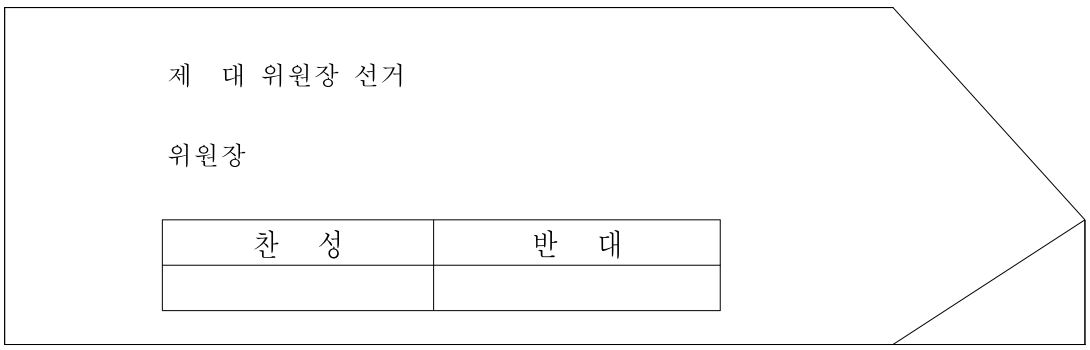

제 대 위원장 선거

위원장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1호)

투 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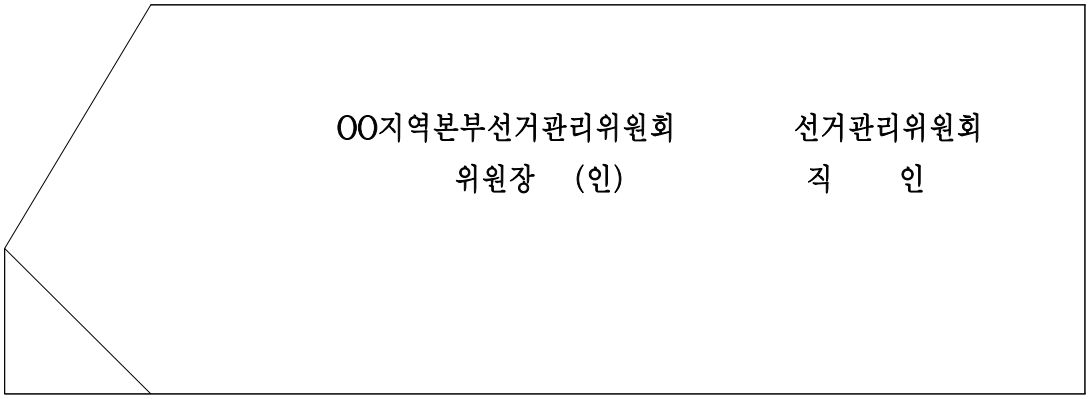

(전면)

*** 다수 입후보시**

(후면)

*** 단일후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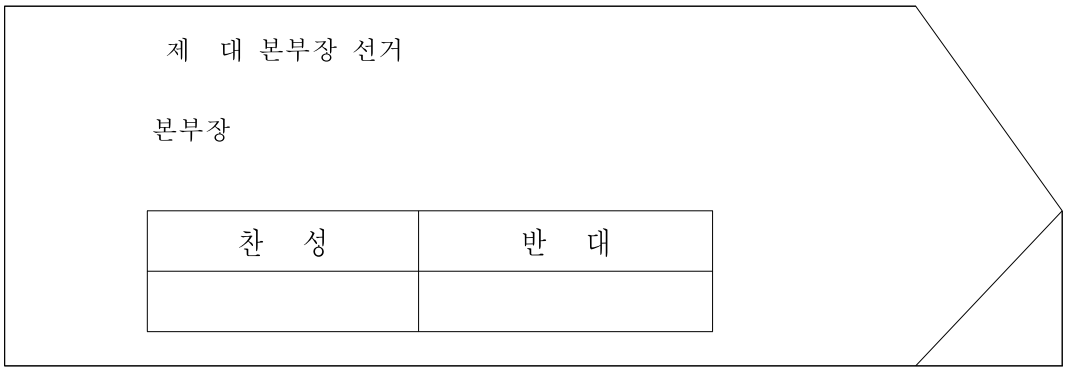

(후면)

(서식 제6-2호)

투 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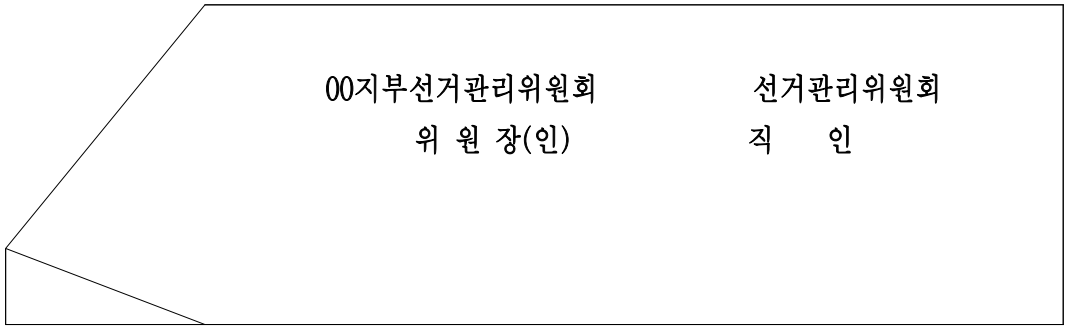

(전면)

*** 다수 입후보시**

제 대 지부장 선거

기호	성명		
1	지 부 장 ( )		
2	지 부 장 ( )		
3	지 부 장 ( )		

***( )는 동반출마의 경우 직명.(후면)**

*** 단일후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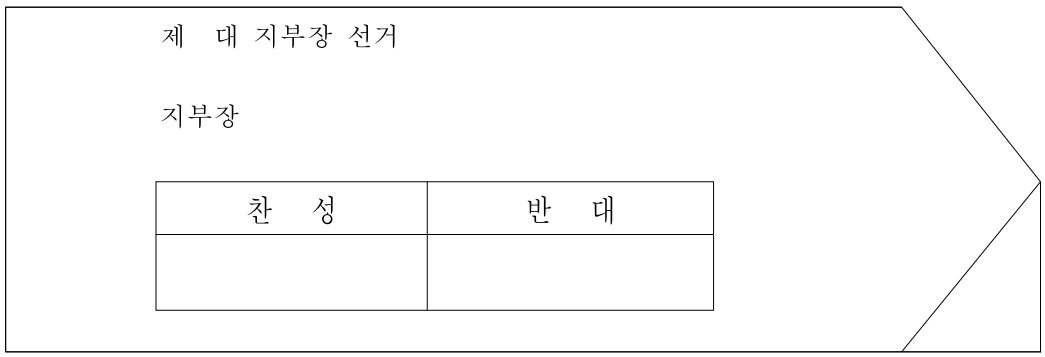

제 대 지부장 선거

지부장

찬 성	반 대

(후면)

(서식 제6-3호)

투 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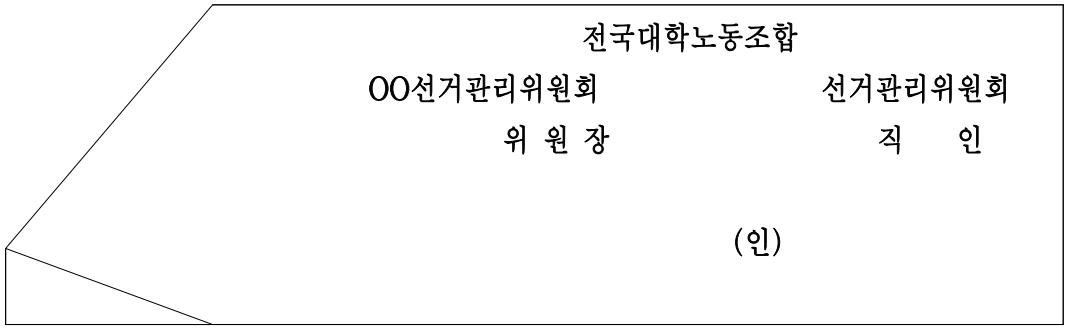

(전면)

***본부조합 수석부위원장 선거**

제 대 부위원장 선거

기호	성명		기표란
1	부위원장후보		
2	부위원장후보		
3	부위원장후보		
4	부위원장후보		

(후면)

***본부조합 사무처장 선거**

제 대 사무처장 선거

기호	성명		기표란
1	사무처장후보		
2	사무처장후보		
3	사무처장후보		
4	사무처장후보		

(후면)

*본부조합 회계감사 선거

제 대 회계감사 선거

기호	성명		기표란
1	회계감사후보		
2	회계감사후보		
3	회계감사후보		
4	회계감사후보		

(후면)

*지역본부 부본부장 선거

제 대 부본부장 선거

기호	성명		기표란
1	부본부장후보		
2	부본부장후보		
3	부본부장후보		
4	부본부장후보		

(후면)

*지역본부 사무처장 선거

제 대 사무국장 선거

기호	성명		
1	사무처장후보		
2	사무처장후보		
3	사무처장후보		

(후면)

*지역본부 회계감사 선거

제 대 회계감사 선거

기호	성명		기표란
1	회계감사후보		
2	회계감사후보		
3	회계감사후보		
4	회계감사후보		

(후면)

*지부 부지부장 선거

제 대 부지부장 선거

기호	성명		기표란
1	부지부장후보		
2	부지부장후보		
3	부지부장후보		
4	부지부장후보		

(후면)

*지부 사무국장 선거

제 대 사무국장 선거

기호	성명		
1	사무국장후보		
2	사무국장후보		
3	사무국장후보		

(후면)

*지부 회계감사 선거

제 대 회계감사 선거

기호	성명		기표란
1	회계감사후보		
2	회계감사후보		
3	회계감사후보		
4	회계감사후보		

(후면)

(서식 제7호)

투개표 참관인증

투개표참관인증

기호 번 OOO 후보

소속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조합원이 기호 번 후보자의 (투표, 개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7-1호)

투개표 참관인증

투개표참관인증

기호 번 OOO 후보

소속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조합원이 기호 번 후보자의 (투표, 개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7-2호)

투개표 참관인증

투개표 참관인증

기호 번 OOO 후보
(OOO 후보)

소속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조합원이 기호 번 후보자의 (투표, 개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00지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8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제 대 위원장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1	위원장			
2	위원장			
3	위원장			

재적조합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OO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1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제 대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수석부위원장	1			
	2			
	3			
사무처장	1			
	2			
	3			
회계감사	1			
	2			
	3			

재적대의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2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장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제 대 본부장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1			
2			
3			

재적조합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3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제 대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부본부장	1			
	2			
	3			
사무처장	1			
	2			
	3			
회계감사	1			
	2			
	3			

재적대의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4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장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제 대 지부장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1	지부장			
	(OOO)			
2	지부장			
	(OOO)			
3	지부장			
	(OOO)			

재적조합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 )는 동반 출마시 적용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5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임원 선거결과 보고

년 월 일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제 대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선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부지부장	1			
	2			
	3			
사무국장	1			
	2			
	3			
회계감사	1			
	2			
	3			

재적대의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8-6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선거결과 투표율 보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제 대 위원장 선거결과 투표율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부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투표율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OO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제 대 위원장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1	위원장			
2	위원장			
3	위원장			

재적조합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위 원 장 후보 OOO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1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제 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투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부위원장	1			
	2			
	3			
사무처장	1			
	2			
	3			
회계감사	1			
	2			
	3			

재적대의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2.최종당선인

가. 수석부위원장 기호 번 OOO

나. 부위원장 기호 번 OOO

기호 번 OOO

다. 사무처장 기호 번 OOO

라. 회계감사 기호 번 OOO

기호 번 OOO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2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장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제 대 본부장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1			
2			
3			

재적조합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본 부 장 후보 OOO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3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임원 선거 당선인 결정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제 대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투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부본부장	1			
	2			
	3			
사무처장	1			
	2			
	3			
회계감사	1			
	2			
	3			

재적대의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2.최종당선인

가.부본부장 기호 번 OOO

기호 번 OOO

나.사무처장 기호 번 OOO

다.회계감사 기호 번 OOO

기호 번 OOO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4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장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제 대 OO지부장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1	지부장			
	(OOO)			
2	지부장			
	(OOO)			
3	지부장			
	(OOO)			

재적조합원		총투표자 수		투표율	

*( )는 동반 출마시 적용

2. 최종 당선인

기호 번 지 부 장 후보 ○ ○ ○

(○ ○ ○) 후보 ○ ○ ○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제9-5호)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임원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된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 제 대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투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득표율
부지부장	1			
	2			
	3			
사무국장	1			
	2			
	3			
회계감사	1			
	2			
	3			

재적대의원		총투표자수		투표율	

2.최종당선인

가.부지부장 기호 번 OOO

기호 번 OOO

나.사무국장 기호 번 OOO

다.회계감사 기호 번 OOO

기호 번 OOO

년 월 일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준용)각 급 대의원 선거 공고 등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임원 선거 서식에 준한다.

상벌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2000년 2월 10일 개정
2001년 8월 23일 개정
2012년 8월 13일 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2019년 1월 29일 개정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8장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
①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계 인사에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② 지역본부와 지부로부터 포상신청(서식 제1호)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본부장과 지부장의 요청에 의하며, 이 경우 표창장 및 상패(품)를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자주적이고,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본부·지부·조합원
②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역본부·지부·조합원
③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역본부·지부·조합원
④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과 단체
⑤ 사무처장이 공적서와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무처 성원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아래 각항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① 모범조합원 표창
② 공로표창
③ 감사표창
④ 사무처 성원은 공적에 따라 유급휴가, 특별승급 및 특별승진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서와 포상추천서 각 1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상) 시상은 제2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및 조합 창립기념일에 표창한다.

제7조(징계) 조합의 임원 및 지역본부, 지부장, 조합원 및 명예조합원 등이 규약 제64조 각 항의 해당되었을 때 징계할 수 있다.(2019.1.29. 개정)

제8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조합의 임원은 규약 제51조에 의해 탄핵소추가 있어야 한다.
② 조합원의 징계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고장으로 갈음한다.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유기정권에 처한다.
2. 정권
가. 유기정권 : 기간동안 선거권은 유지하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단, 유기정권은 2년 이내로 하되 월 또는 연 단위로 처분한다.
나. 무기정권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조합간부로서의 활동을 정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3. 제명 : 조합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4. 위의 징계와 함께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여 공개사과를 병과할 수 있다.
(2012.8.13. 개정)
③ 조합에서 임금을 받는 사무처 성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감봉 : 통상임금의 1/20의 범위에서 임금을 감한다.
3. 정직 : 3개월 이내에서 출근을 정지하고 근신하게 한다.
4. 해고 : 즉시 해고한다.
④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9조(징계기관)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임원의 탄핵소추는 선출기관에서 하며, 기타 징계는 규약에서 정한 해당기관에서 결정한다.

제10조(통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서식 제2호)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의서(서식 제3호)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요구) 징계요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결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서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지역본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2.10 개정) (2001.8.23. 개정) (2017.9.26. 개정)
② 지역본부, 지부 임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 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중앙위원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징계결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2.10 개정)
③ 사무처 성원은 사무처장이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결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절차)
① 징계 제청이 있는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각 징계 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30일 이내로 1회 연기할 수 있다.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파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2012.8.13 개정)**
② 중앙위원회는 징계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조합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중앙위원 중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단, 중앙위원의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고 즉시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제청기관 및 관련당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④ 징계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증인의 청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을 다루는 회의의 성원과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징계

최종 확정 후 징계심의 요구서, 징계당사자의 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위원장 및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척 및 기피

1. 위원 중 징계협의자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협의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8.13. 개정)

제14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①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②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③ 징계결의시 재심청구권

제15조(재심청구) 징계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확정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2000.2.10 개정)

제16조(재심절차) 징계재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즉각 징계재심기관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다.

제17조(징계재심위원회) 징계재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초심에서 징계위원에 참여한 조합원은 징계재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외부 전문가를 5인 이내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식 제1호)

포상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인 적 사 항</td><td>성 명</td><td></td><td>소 속</td><td></td></tr>
<tr><td>직 위</td><td></td><td></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포 상 사 유</td><td colspan="4"></td></tr>
<tr><td>포상신청권자
의 견</td><td colspan="4"></td></tr>
<tr><td>입 증 자 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포 상 신 청 권 자 ㊞

중 앙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td></tr>
<tr><td colspan="5">*참고
1.지역본부나 지부에서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본부장이나 지부장이 신청함.
2.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공적서와 포상추천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td></tr>
</table>

서식 제2호)

징계사유통보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징계요구권자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 견				
요구일시	년 월 일			
중앙위원의견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

귀하

서식 제2-1호)

징계사유통보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징계요구권자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 견				
요구일시	년 월 일			
중앙위원의견				

년 월 일

중앙위원회위원장 ㊞

귀하

서식 제3호)

징계(재심)결의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결의사항				
결의사유				

년 월 일

징계(재심)위원회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와 같이 결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

귀 하.

*참고 : 징계결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 규약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징계결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3-1호)

징계결의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결의사항				
결의사유				

년 월 일

중앙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와 같이 결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 ㊞

귀 하.

*참고 : 이 결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 규약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이 결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4호)

징계결의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 견				
입증자료				

위와 같이 징계결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요구권자 ㊞

징 계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참 고

1.지역본부, 지부임원의 경우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 또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 중앙위원의 과반수 연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조합원의 경우 지역본부운영위원회나 지부의 집행부회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5호)

출석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출석사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정에 따라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 출석일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 귀하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제5-1호)

출석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출석사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정에 따라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 출석일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재심청구서

<table>
<tr><td rowspan="3">인 적 사 항</td><td>성 명</td><td></td><td>소 속</td><td></td></tr>
<tr><td>직 위</td><td></td><td></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청 구 사 유</td><td colspan="4"></td></tr>
<tr><td>재 심 의 견</td><td colspan="4"></td></tr>
<tr><td>근 거 자 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징 계 재 심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td></tr>
</table>

희생자구제규정

1999년 2월26일 제정
2010년 8월26일 개정
2022년 7월28일 개정
2024년 2월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3조에 의거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구제 및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신분보장에 기여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을 수행하거나, 규약 제13조에 정한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 등 조합활동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부득이 퇴직한 경우
3. 부상 또는 질병
4.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5. 징계, 계약갱신 등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2022.7.28. 개정)
② ‘임금피해액’이라함은 통상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전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3조(구제기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망, 부상, 질병, 징계 및 임금피해액의 구체적인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제기준을 정하며, 중앙위원회에 승인으로 확정한다. (2024.2.15. 개정)

제4조(구제신청) 이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보장 및 구제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제결정) 구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예정된 차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구제신청을 받은 달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6조(구제실행) 구제실행은 구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제금 지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 구제금은 기금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2022.7.28. 개정)

제8조(구제금의 환수) 희생자는 구제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구제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기금운용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010.8.26. 신설) (2022.7.28. 개정)
① 삭제(2022.7.28. 개정)
② 삭제(2022.7.28. 개정)
③ 삭제(2022.7.28. 개정)

제9조(기금조성) 삭제(2024.2.15. 개정)

재10조(의무) 구제금을 지원받는 희생자는 아래와 같은 자구노력 및 조직활동에 복무해야 한다.
①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부당노동행위(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② 기금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일지작성 및 매월 말 월간보고서 제출
③ 해고, 정직 등으로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기간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 수행 및 조합으로의 출근(단,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본부, 지부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음)
④ 조합 및 본부, 지부 결정사항의 충실 이행 및 해당 단위 투쟁의 적극 복무
(2024.2.15. 조항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정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분보장 및 구제신청서

결재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이 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본부/지부	(지역본부) / (지부)		
사 유	☐ 사망 ☐ 부상 또는 부득이 퇴직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 ☐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 징계, 계약갱신 등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사유발생 경 위			
사유발생일	년 월 일	통상급여액	만원 / 月

본인은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 등 조합 활동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분보장 및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며, 희생자구제규정 제10조를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제 출 일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지 부 장 인

본 부 장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귀중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안정된 투쟁과 각종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① 해고자 복직투쟁과 관련 한 조직 및 교육, 선전, 투쟁사업
② 연대사업 및 해고자 복직 투쟁을 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제3조(조직) 위원회는 구성은 정권과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대학노동자로서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에 동의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규약이 정한 권리 및 이 규정에 의해 소집된 각종 회의의 참여, 의결권.
② 조합의 규약이 정한 의무 및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 준수할 의무.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5조(기관 및 회의) 위원회는 전체회의, 대표자회의, 집행회의 및 후원회를 두며, 구성과 활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전체회의는 이 규정에 의해 가입절차를 마친 전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대표자회의는 각 지역별 회원의 인원비례에 따라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회의를 갈음하는 기구이다.
③ 집행회의는 위원장과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구성된 집행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사업집행을 책임진다.
④ 후원회는 위원회를 지원할 것을 결의한 대학구성원 및 노동자, 학생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업을 공유하고 재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제6조(재정사업) 위원회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독자적인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전체회의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회원의 회비, 조

합의 투쟁지원금을 기본재정으로 하고, 재정사업 및 후원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조합의 회계와 같다.

제9조(규율)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포상하거나 징계한다.
① 회원의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회의를 통해 조합의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회원이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징계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체회의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③ 상벌의 내용은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성립과 의결) 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② 조합에 위원회의 해산을 제청하거나, 위원장을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해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① 위원회 설치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을 때.
② 이 규정 제10조 제2항의 의결되었을 때.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고문 및 지도위원 등에 관한 규정

1999년 2월 26일 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4장 제10절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의 역할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의 질적 내용을 확보하는데 있다.

제2조(위촉) 고문 및 지도위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고문 및 지도위원은 대학노동조합 발전과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조합 내외 인사.
② 자문위원은 대학 및 노동문제에 대한 자문역을 맡을 수 있는 조합 내외 인사.
③ 전문위원은 대학노동조합의 정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합 내외 인사.

제3조(임기) 고문 및 지도위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역할) 고문 및 지도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고문 및 지도위원은 조합의 주요사업 계획과 시행 및 평가에서 조합의 요청에 따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자문위원은 조합의 주요사업 계획과 시행 및 평가에서 조합의 요청에 따라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책 연구의 계획, 시행 및 평가를 담당한다.
④ 조합의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갖는다.

제5조(회의) 고문 및 지도위원 등은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요청할 때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2017.9.26. 개정)
③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조합의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고문 및 지도위원 등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수당 및 여비 등은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
① 고문, 지도위원은 조합 상근임원에 준하여 판공비를 지급하고 회의 등에 참가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②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정기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제7조(협조) 고문 및 지도위원 등의 활동을 위하여 조합의 각급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운영규정

2002년 8월 2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담당자는 사무처 내에 정보통신담당자를 둔다.

제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① 조합원 중심 관리
②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③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④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⑤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2장 이용자

제5조(이용자의 권리)
① 대학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조직 외부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대학노조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이용자 정보 관리)

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④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단, 아래의 항목이라고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대학노조 산하조직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할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경우.

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 단,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사전에 자료보관을 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이 공지사항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이용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공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삭제한다.

제3장 게시판의 운영

제7조(게시판) 게시판이란 대학노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에서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써 익명게시판과, 실명게시판, 자료게시판을 말한다. 각 게시판은 업무상 필요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신설할 수 있으며, 게시판의 보관은 제17조에 준한다.
① 실명게시판 : 가입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가입절차와 항목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가입 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제6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익명게시판 : 익명게시판은 가입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하며, 이 게시판에 대해서는 사전공지 없이 IP 등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③ 자료게시판 : 자료의 축적과 배포를 위해 개설한 게시판을 말한다.

제8조(질문 등에 대한 답변)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용자-운영자(조합)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상담실', '운영자에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중복 게시물 처리)
① 중복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중복 게시물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10조(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
① 명의 도용 게시물임을 도용당한 자가 증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명의도용 게시물이라 함은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11조(상업적 광고)
① 상업적 광고는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상업적 광고란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말한다.
③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게시물을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제12조(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제13조(성차별적 게시물 등)
① 성차별적인 게시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별도 보관 후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동성애자, 장애우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4.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②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나 암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과 적대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말한다.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2.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14조(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제15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2일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경위를 보고한다.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조합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① 중앙소식은 사무처장, 부서 관련 소식/자료는 실(국)장, 지부소식은 지부장의 책임 하에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공지사항', '주간통신', '자료실'등)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

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4장 게시판 운영위원회

제17조(게시판 운영위원회)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8조(게시판 운영위원회 구성) 임원 중 1인, 중앙위원 2명 담당부서 1인(별도의 담당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제외), 정보통신담당자 1인, 법규담당자 1인으로 구성한다. 그 외 별도로 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문제의 당사자가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경우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원으로 한다.

제19조(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소집) 게시판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② 피해당사자나 조합/지부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③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인 삭제 또는 수정을 결정하려면 게시판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이미 삭제 또는 수정한 게시물은 원상 복구한다.
② ①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5장 이의절차

제21조(이의신청)
① 담당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팩스,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제23조(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집, 중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6장 자료의 보관

제24조(자료의 관리)
① 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조직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대학노조의 정보통신에서 이용자에게 공개된 자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고 인용, 전제할 수 있다. 단,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용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 게시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3년간 저장해야 한다. 단,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렇지 않다.
④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CD 등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 폭언, 폭행 금지규정

2005년 4월 12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강령 및 규약 제4조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 폭언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존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1. 육체적 행위 : 형법상의 추행, 강간을 포함하여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등
4.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 기타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1.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2.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행동 또는 발언을 강요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합 남녀간부 및 조합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 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중앙집행위원회의 사건 처리 종결까지 또는 당사자가 제소할 경우 중앙위원회 재심까지 유급휴가를 준다.
③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

제5조(예방)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6조(처리절차 · 징계)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피해자(대리인)는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가능한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여성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대책기구를 구성한 뒤 활동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접수 후 1달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 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④ 구체적인 징계절차 및 내용 등은 조합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아리 지원 규정

2012년 1월 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해 본부와 지부 및 조합원의 연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 지원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동아리’라 함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② ‘동아리’ 구성원 중 비 조합원이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3조(지원 자격)
이 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아리는 2개 이상의 지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으려는 동아리는 조합의 정기 또는 임시 대의원대회 전에 동아리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역, 동아리 회원 명부, 동아리 통장 사본을 각각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아리 통장은 동아리 소속 회원 명의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③ 사무처는 동아리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즉각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해 심의하도록 한다.

제5조(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 동아리 선정 및 개별 동아리의 지원 금액을 심사해 결정한다.
② 동아리 지원금은 상하반기(반 분기별로)로 나눠 지원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동아리는 매년 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연간 주요 활동 및 회계 내역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6조(지원 연장 및 제한 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동아리 활동내역을 검토한 후 계속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금액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접수된 동아리 활동 내역이 조합의 활동 목적, 동아리 지원 목적 등에 반하는 경우, 활동 내용이 없는 경우,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의 범위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기금운용규정

2024년 2월 15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따라 투쟁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종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쟁기금
2. 희생자구제기금
3. 법률쟁송기금
4. 퇴직금적립기금
5. 발전기금

제3조(기금 예치) 기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 기금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제2장 투쟁 기금

제5조 (기금의 목적) 투쟁기금은 중앙 또는 본부, 지부단위 투쟁 지원 및 연대 투쟁에 대한 지원,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 사수를 위한 투쟁, 대학공공성 강화 투쟁 등의 승리를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투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에 가입한 각 조직이 출연한 금액
2. 조합원 등의 기탁금
3.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금액
4.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금액
5. 기타 수입

제7조(결산) 투쟁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월 1회 기금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고, 투쟁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희생자 구제기금

제8조(지급대상)희생자 구제기금은 희생자구제규정 제2조1항에 따른 희생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희생자 구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 등의 기탁금
2.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금액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적립금
4. 기타 수입

제10조(기금의 집행) 기금의 집행은 당사자의 구제신청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지급제한) 희생자구제기금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다.

①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회복된 경우
② 조합의 방침이나 결정사항에 반하는 행동으로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③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정권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④ 취업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제12조(해고자 등에 대한 구제기금 지급) 희생자 중 해고자와 정직자에 대한 구제기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신규 지부의 경우는 조합비 납부 3개월 이후부터 해고자 구제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해고자 구제기금은 해고 확정 월로부터 해고의 유무효를 다투는 법적 쟁송 최종 심의 확정 월까지 지급한다.
② 법률쟁송에서 패소한 해고자의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해고자에 대한 구제기금 지급기준은 기금의 규모와 해고된 인원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해고자들의 활동은 해당 지부와 (지역)본부에서 총괄하며, 1개월 단위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해고자의 활동을 심사하여 해고자 구제기금 지급의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해고자가 해당 사업장의 정년에 도달하면 구제기금 지급을 중단한다.
⑤ 정직자에 대한 구제기금 지원은 해고자 구제기금 지급기준에 준하며, 정직자가 급여의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해고자 구제기금 지급액과의 차액분만을 지급한다.
⑥ 해고무효, 임금체불 등의 법률쟁송의 수임료는 민주노총 법률원 수임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본부조합2.4:본부0.6:지부7.0의 비율로 분담한다.

4장 법률쟁송기금

제13조(목적) 법률쟁송기금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본부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의 법적쟁송 발생 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 법률쟁송기금은 조합원총회(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한다.

제15조(기금의 집행) 기금의 집행은 당사자의 지급신청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한다.

제16조(집행의 기준) 대학노조를 직접 당사자로서 진행되는 법적 쟁송으로서 아래의 쟁송사건을 대상으로 집행한다.

① 단체협약 무효 확인, 부당노동행위, 교섭단위분리,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적 쟁송(단, 이 경우 쟁송비용은 본부조합2.4:본부0.6:지부7.0의 비율로 분담하며, 민주노총 법률원 수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대학노조 또는 대학노조 기구(특히 중선관위, 징계위)의 해석이나 판단의 결과에 관한 법적 쟁송으로서 선거무효확인/가처분, 징계무효확인/가처분, 조합원지위확인/가처분 등. 단, 선거에 관해서는 부정선거운동 등 개인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선관위 등 대학노조의 해석에 따랐더라도 상관없으며,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선거 모두 해당)와 본부장 및 지부장 선거인 경우(이유불문)는 제외
③ 대학노조 채용간부의 조합 활동과 관련한 법적 쟁송
④ 대학노조가 직접 당사자로서 제기하여 진행되는 법적쟁송
⑤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쟁송 사건

5장 퇴직적립기금

제17조(목적) 퇴직적립기금은 사무처 성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퇴직적립기금은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한다.

제19조(기금의 집행) 퇴직적립기금은 사무처 성원의 퇴직 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장 발전기금

제20조(목적) 발전기금은 사무실임대 보증금 및 사무실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적립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운용규정

제21조(기금의 조성) 발전기금은 조합원의 기탁금, 기타 발전기금 수입을 재원으로 적립한다.

제22조(기금의 집행) 기금 집행의 필요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

2025년 5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한다)의 대표자, 임원, 사무처 성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금지함으로써 사무처 성원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대표자, 임원, 사무처 성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무처 성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장소를 불문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사적 공간,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은 각 항과 같다.
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③ 다른 간부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성적취향, 고용형태, 국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⑤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⑥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⑦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⑧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⑨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⑩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⑪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거나 임원과 사무처 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직)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할 임원, 사무처 성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각 1명 이상 두며, 그 역할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3. 직장 내 괴롭힘 약식 조사(비공개 조사)
4.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진행
5.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

제6조(예방·대응 담당자의 책무)
① 예방·대응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진행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 내용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조사를 위한 상담 내용 보고는 예외로 한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피해 호소인의 요청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사무처 결재권자(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상담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방·대응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 호소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예방·대응 담당자는 신고접수가 있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방·대응 담당자의 제청과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6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예방·대응 담당자는 조사 심의 완료 후 10일 내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8조(사건의 조사)

①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대표자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합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조치)

① 조합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동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유급휴가 부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배치전환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조합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노동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③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중앙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제11조(재발 방지 조치 등)

①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제4조에 따른 교육 외 추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및 제공)

①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검토한 모든 서류 및 조사보고서는 해당 사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가 제1항 자료를 요청할 시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사본 혹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